

제439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17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9)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9)
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7)
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8)
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5)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16)
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16)
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0)
1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8)
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2)
1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6)
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02)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30)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45)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2)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50)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4)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6)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2)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8)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0)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7)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0)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12)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8)
3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7)
3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0)
3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1)
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1)
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8)
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8)
3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3)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7)
4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50)
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7)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0)
4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3)
4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15)
4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8)
4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7)
4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65)
5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4)
5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7)
53. 예방접종관리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01)
54. 예방접종관리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8)
55.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
5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4)

5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98)
5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1)
5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6)
6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6)
6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0)
6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92)
6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2)
6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5)
6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9)
6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6)
7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8)
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3)
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5)
7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1)
7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1)
7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5)
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5)
7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1)
8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7)
8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0)
8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7)
8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2)
8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07)
8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43)
8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3)에 대한 번안의 건(한지아 위원 서면동의)

89. 현안질의

상정된 안건

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9)	10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9)	10
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7)	10
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8)	10
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5)	10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16)	10
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16)	10
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0)	10
1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8)	10
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2)	25
1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6)	25
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02)	25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30)	25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45)	25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2)	25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50)	25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4)	25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6)	25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2)	25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8)	25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0)	25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7)	25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0)	25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12)	25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3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8)	25
3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7)	25
3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0)	25

3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1) ...	25
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1) ...	25
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8) ...	25
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8) ...	25
3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3) ...	25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7) ...	25
4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50) ...	25
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7) ...	25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4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0)	25
4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3)	25
4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15)	25
4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8)	25
4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4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7)	26
4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65)	26
5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5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4)	26
5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7)	26
53. 예방접종관리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01)	26
54. 예방접종관리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8)	26
55.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	26
5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4) ...	26
5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98)	26
5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1)	26
5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6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6)	26
6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6)	26
6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0)	26
6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92)	26
6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2)	26
6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6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5)	26
6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9)	26
6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6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6) ...	26
7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8) ...	26
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3) ...	26
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7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5)	26
7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1)	26
7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1)	26
7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7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5)	26
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5)	26
7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1)	27
8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7)	27
8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0)	27
8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7) ...	27
8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8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2)	27
8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07)	27
8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43)	27
8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8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3)에 대한 번안의 건(한지아 위원 서면동의)	38
89. 현안질의	40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만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

과를 듣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만희 말씀하십시오.

○이소희 위원 자료요구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식약처에 자료 요청합니다.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 식약 청탁 의혹 관련해서요,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소관 쟁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의 청탁으로 식약처의 임상승인 절차에 영향을 미쳐서 졸속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이게 승인이 안 될 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보완요구 문건이 필요합니다, 9월 30일에 나갔던. 이거는 최소한의 자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지금 계속해서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제출한 자료로써 기업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자료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계속 나오고 있지만 93명이 투약됐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실험 검사가 조작이 돼서 그에 의해 자료에 기해서 나간 임상실험이기 때문에 부실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이 투약된 분들의 건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체크가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보고서가 필요한데 이것 또한 저희 의원실에서 몇 번이나 수차례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기업이 제출한 자료로서 기업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출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린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상 사례 보고서 또한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3개 기관에서 이 임상시험 관련해서 실험을 했다고, 임상을 했다고 나왔는데요, 이 기관에 대한 명칭이나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도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식약처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전체를 자료제출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비식별조치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음에도 전체를 계속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사실은 이게 과연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러한 사항이 있고 국민들 93명에게 투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보호하려는 것인가,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이게 과연 제네셀을 위한 것인지, 김승원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식약처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이게 국회에서 일을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료 전부를 제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배숙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이만희 잠깐만요.

○이수진 위원 얘기 좀 하시고 하시지요.

○위원장 이만희 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위원장 이만희 지금 이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들은,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좀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식약처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이 어느 기업을 얘기하시고 염두에 두고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진숙 위원 아니, 식약처가 보호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맞지도 않지.

○조배숙 위원 자료 요청……

○이수진 위원 말씀 좀 하시고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이만희 조금만 진행해서……

○조배숙 위원 아니요. 자료 요청……

○전진숙 위원 하고 합시다.

○이수진 위원 진행 좀 하고 하세요. 보통은 좀 진행하고 하는 건데……

○위원장 이만희 알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자료 요청이지요?

○조배숙 위원 예.

식약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조배숙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질의할 때 제넨셀 임상승인 그거를 14개 항목을 보완하라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14개 항목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 했는데 그 뒤로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그렇습니까, 위원님?

○조배숙 위원 예, 그래서 그걸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위원장 이만희 한지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한지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난 전체회의에서 제넨셀의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처의 평가가 엇갈렸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제넨셀이 복지부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발표 자료를 복지부로부터 열람을 하고 이 내용을 전문가에게 확인해 본 결과, 발표 자료에 제시된 비임상 결과만으로는 동물실험에서 유의한 효과가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넨셀의 치료제 후보물질 관련 특허자료까지 제가 직접 찾아 검토했지만 전문가의 판단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식약처는 어떤 과학적 근거로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열람도 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관련 내용은 이미 특허를 통해 원천기술이 보호되어 있고 상당한 기술 내용도 공개되어 있음에도 이렇게 숨기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식약처가 기업의 영업비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기관은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 들고.

과학이라는 것은 과정·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을 때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식

약처의 판단이 과학적이고 정당했다면 오히려 그 근거를 공개하고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식약처가 충분한 설명 없이 비공개 입장만 반복하는 것은 승인 과정에 대한 의혹은 커지고 식약처의 전문성과 심사에 대한 신뢰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식약처는 제넨셀이 제출한 코로나치료제 후보물질 관련 비임상 자료 일체를, 제넨셀이 제출한 비임상 자료를 적합하다고 승인한 식약처의 내부 검토보고서 및 심사자료를, 10월 18일 보완 자료 제출 후 10월 22일에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을, 없다면 결과 보고서를 그리고 제넨셀의 임상시험과 관련한 통상적인 IRB 심의·승인 절차와 각 임상시험 실시기관, IRB가 해당 임상시험을 심의·승인한 근거 및 관련 회신 자료를. 그리고 복지부는 제넨셀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지원 사업에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발표자료, 비임상시험 자료까지 열람이 아닌 제출자료 일체와 검토·평가자료 일체를 위원장님께서 오늘 중으로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웅 위원** 저도 짧게……

○**위원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저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복지부장관님께 확인만 하겠는데요.

치의학연구소 설립 관련한 연구용역한 것에 대해서 1차는 다 공개돼 있고 2차도 끝난 걸로 아는데 공개하거나 제출 요청했더니 전해 듣기로 초안이 접수됐는데 수정·보완이 필요해서 최종안 작업 중이니까 최종안이 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지금 검수 과정에 있고요. 빠르면 다음 주 중 아니면 9월 안에는 공개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리즘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자료제출 요구들이 많았는데 식약처장님,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1차관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국무위원 대리 참석을 이유로 오늘 11시부터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일단 허가는 했습니다만 오늘 정상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운영이 될지는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행정실에서는 법사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안 의결을 할 차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1시부터 일단 법사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법률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 중에서 형사사법 개편 관련된 법안들을 먼저 상정코자 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소위 회부 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9)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9)
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7)
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28)
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5)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16)
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16)
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30)
1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28)

(10시19분)

○위원장 이만희 의사일정 제1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내용은 각 의원실에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안의 내용은 위원님 좌석의 노트북에 탑재돼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석 소위원장께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서영석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6일 총 39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는데 이 중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법안 2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등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시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 등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청취가 배제되는데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추어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도 보호자의 의견청취를 배제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조인이나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을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 시에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에게는 피의자 출석요구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52조제4항 중 지방공소청장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헌 소위원장께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백종헌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백종헌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9월 15일 총 63건의 법안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법안 7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희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추어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과정에 준용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희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추어 사법경찰관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이 사실관계 확인·면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지연 의원, 한지아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 과정에도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전담검사 규정을 공소청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장관님,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래서 형사소송법도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법사위가 후속 법안을 일괄 처리를 할 텐데, 상임위별로 어떤 특별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개정안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그냥 법무부하고 법사위가 던져 준 안을 그대로 받으신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일단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복지부는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특별한 분야에 필요한 보조인 선임이라거나 진술조력인이라거나 하는 내용들을 같이 저희 부처의 특성을 담아서 지금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대개의 경우 검

사가 피해자나 참고인을 조사해 가지고 조서를 작성해서 증거동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증거능력이 있게 돼요. 그런데 지금 검찰청의 수사권이 이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이 개정안에 보니까, 원래 옛날에는 검사의 피해자 조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이다 이렇게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증거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것은 좀 일반적인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일반적인 형사사법체계라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조배숙 위원 검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아마 형사소송법에도 검사의 조사나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 안 할 거거든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조배숙 위원 증거능력이 없는데 이미 이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조사받는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받거든요. 울고 막 겁을 내고…… 자기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받고 두려워하고 이렇습니다. 곤욕을 치르는 것 같은 기분이예요.

그런데 지금 검사 쪽으로 서류가 넘어갔을 때 면담을 한다? 이 부분이 어떤 증거능력이 있어서 피해자한테 도움이 되면 모르지만 형사소송법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냥 면담으로 끝날 거거든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면담을 놓고 다시 공소청에 가 가지고 또 조사를 받는데 이렇게 받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가.

피해자들이 다시 이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률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서로 충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경찰이 최종적인 수사권을 가지니까 그러면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조서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를 보고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적으로 뭔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피해자들 특히 학대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는 경찰 수사든 아니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 등 충분하게 피해자들의 권리나 그런 부분들이 보장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 전체 사례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보완하도록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할 수 있다’는 좋은데 그러면 형사소송법 절차상 피해자한테 유의미한 뭐가 있어서 되지 않나. 그것이 검찰이 수사권이 폐지돼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차원에서 꼭 그런 부분을 좀 더 알아 보시고 또 고민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형사소송법에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반에 적용되는

형사수사체계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것과 또 저희 영역에서 특별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 더 앞단의 형사소송법에서 검토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서 말씀 주신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하면서 보완책들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마치셨지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소희 위원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추기 위해 관련 법률들을 다시 손봤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먼저 없애 놓고 이제 개별법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하나씩 찾아 다시 고치고 있는 겁니다. 의료사고에서 하나 그리고 아동복지, 마약류에서 또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만 7개 법안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와 여당에서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문제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손보고 있는 법을 한번 보십시오. 의료사고 피해자, 학대받는 아동, 마약범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코 검경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민생과 생활, 무엇보다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계적으로 후속 법안을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제도가 국민과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모자란 측면들은 없는지, 이대로 고쳐도 되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 위원회가 다루는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이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의원실에서 주최한 ‘이재명 정권이 포기한 청년의 삶 - 보완수사권 폐지, 2030 여성의 일상안전은 누가 지키나’ 토론회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한 정수경 변호사가 이런 사례를 전해 주셨습니다.

중학생 딸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절차가 지연되자 피해자 부모가 물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동네에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우리 딸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게 지금 검찰청 폐지 이후 아수라장이라고 표현되는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국민께 우리가 답해야 할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돼서 법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런 결론이 아닙니다.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될 수가 있는지,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누가 끝까지 살펴봐 줄 수 있는지와 같은 국민의 질문과 걱정に対する 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후속 입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변경되는 절차 안에서 실제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를 했습니까? 복지부장관님 그리고 식약처장님, 이 법안들이 국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국민은 실험 쥐가 아닙니다. 국민과 피해자의 안전을 시행착오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태도면 그 사이의 피해는 누가 집니까? 지금 고려하지 못했던 피해자가 나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게 제가 이번 후속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희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최보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보운 위원 지금 형사사법시스템이 전면적 마비가 되고 있고요. 타 상임위에서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말씀 주신 2소위 관련된 법안만 보더라도 저희가 보건복지위에서 정말 충실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건복지위는 사회적 약자의 민생범죄, 이런 중요한 범죄들이 다루어질 수 있는 관련된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이나 부실수사에 대해서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요원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경찰의 수사의 전문성이나 부실수사에 대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보운 위원 우려가 있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저희가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보고 또 민심의 경우에도 봤을 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보도되고 있는 점은 알고 있고요.

○최보운 위원 그러면 더욱더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살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을 보면 보완수사권 박탈로 인해서 또 학대 노인의 구제가, 좀 실효성 있는 사실관계 확인에 면담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소유지 담당하는 검사만으로는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된 상황 자체를 두고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상황이 문제가 된다 또 실효성 없는 문구성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 말씀드립니다.

또 장애인복지법을 보더라도 지금 형사사법체계 왜곡을 가리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부분은 경찰수사 과정이든 검사의 면담 과정이든 충분히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보운 위원 그런데 경찰의 초기 조사만으로는 진실 규명이 부족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수사의 충실성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되는 부분이어서요.

○최보운 위원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검찰이 이것을 직접 더 들여다보는 것과 그리고 수사하는 것과 경찰의 초기 조사만으로 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일단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충실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최보윤 위원** 경찰의 초동수사가 잘되지 않으니까 검사의 보완수사권 제도 자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보윤 위원** 그 제도를 없애면, 한 번 더 있는 제도를 없애면 인권보호가 더 어렵게 된다, 검찰의 세심한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특히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인권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장애인분들은 훨씬 더, 특히 발달장애인은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과정이나 이런 면담 과정에서 충분한 보조인이나……

○**최보윤 위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한 번 더 있으면 더 충분한 인권 보호가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발달장애 보호 역량 약화의 우려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쪼개 놓으면 특수한 소통 방법과 전문적 수사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인 경우에 유기적인 협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몰돼서 이렇게 발달장애인이나 노인 학대, 여러 사건을 비롯한 지금 2소위의 법안들이 검찰의 보완적 수사·조사 기능을 형해화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고요. 보완수사권 보장을 포함한 사법체계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입법들이 충분한 시뮬레이션 없이, 치밀한 대안 없이 정치적 목적에 밀려서 10월 2일 시행을 못 박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타 상임위 법안과의 법적 충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되는 상황인데 각 상임위원별로 연계 법안을 끼워 넣기 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법적 정합성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형사사법의 대수술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향후 복원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보건복지위에서는 더 목소리를 내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형사소송법이 이미 개정이 되고 10월 2일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연관된 법에 대해서는 정합성 측면에서 원칙에 맞는 법 개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보윤 위원** 원칙에 맞는 법 개정을 한다기보다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형사소송법이 그것을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보윤 위원** 우려사항에 대한 요구는 장관께서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성평등가족부장관께서 우려를 표명하시고 사퇴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된 그런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보건복지 분야는 전문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소위 법안도 얘기를 할 텐데 약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한 금융의료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인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고 기능이 중요합니다. 또 대형 불법 리베이트나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지능형 민생범죄에 대한 대항력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약자랑 민생범죄 또 전문수사권 역량 저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된 상황에서 장관님께서 한 말씀 못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수사의 전문성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담길 수 있게끔 계속 협의하겠고요. 가장 우려하시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최보운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려면 지금 통과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형사소송법의 법체계와의 정합성 때문에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고 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게 의견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보운 위원**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더 크게 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 주신 취약계층의 수사나 아니면 기소 단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호돼야 된다고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보운 위원** 그런데 지금 법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러니까 현재 법 개정안에 담아 주신 보조인 선임이나 아니면 진술조력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정리하시지요.

남인순 부의장님.

○**남인순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가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의견 제시도 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보완수사권은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점 또 야당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담아서 취약계층들이 범죄피해자로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법 취지에 맞게……

위원장님께서 형소법을 다시 여기서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심사에 충실하게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만희** 잘 알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들 발언도 아마 같은 의견, 법안에 대한 같은 의견들이시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백종현 간사님 같은 반대하시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정리하고 이것은 의결 절차 들어가시지요, 같은 의견이시니까.

백 간사님,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또 서영석 간사님도 발언 신청하셨는데 두 분들 다 하시게 되면 시간만 또 늘어지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법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므로 국회법 58조 제5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7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첨부을 생략토록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조배숙 위원 저는 기권……

○위원장 이만희 이의 있으십니까?

○조배숙 위원 저는 기권합니다.

○위원장 이만희 이의 있으시면 표현해 주시면, 위원님이 계시면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배숙 위원 저는 이의신청합니다.

○위원장 이만희 만약에 이의가 있는, 조배숙 위원님이 이의를 신청하셨는데요.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에 따라 표결을 해야 되는데요.

○김교흥 위원 아니, 이의 있다고 표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반대 의견을 말씀하신 것은 속기록에 담아서 있으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위에서 백종헌 간사가 위원장으로서 다 통과된 거고……

○위원장 이만희 의결 자체를 함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위원들의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표결 자체에 대해서도 의사표현을 의사록에 남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결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표결 자체는……

○김교흥 위원 아니, 이의 있다고 다 표결하는……

○서영석 위원 아니, 그동안 속기록에 다 남겼는데요.

○위원장 이만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표결 방식의, 이 장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나름대로 방식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수석전문위원, 이의 있으면 다 표결합니까? 표결 여부를 물어보고 표결을 해야지 이의 있으면 표결하냐고. 그런 국회법이 어디 있어.

○**위원장 이만희** 국회법 112조 또 71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김교흥 위원** 아니, 표결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서 표결해야지 이의 있다고 다 표결하는 게 아니지요.

○**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한테, 의사진행은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표결이 필요한지 표결을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이만희** 일단은 표결 자체에 대한, 표결을 부치고 안 부치고 할 부분들은 위원장한테 일단 권한이 있습니다. 결정 권한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들은 위원님대로, 찬성하는 위원들은 위원님대로 이렇게 의결 절차에 부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법안에 대한 표결 자체는 사실은 저도 굉장히 꺼리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타 사항들이니까 이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희**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국회법을 말씀하셨는데 국회법에 국회법도 있고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관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나름 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갖고 합의가 되면 굳이 사실 본회의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기록에는 남겨 둔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표결로……

그러면 매번 사실은 이의가 다 조금씩 있지요. 그럴 때마다 표결을 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의 컨센서스를 존중해서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러면 소위가 필요 없다, 소위가. 소위를 뭐하러 해, 그러면?

○**허종식 위원** 그러면 소위 폐지시켜, 위원장님 직권으로 소위 폐지하시지요.

○**남인순 위원** 여태까지 해 왔던 과정이 있는데……

○**김교흥 위원** 말이 안 되지. 백종헌 간사가 위원장으로 했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앞으로 계속 건건이 표결할 일이에요.

○**서미화 위원** 소위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만희**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도 사실은 법안에 대한 가부를 표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위원회 법도 아닌데,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가졌던 사항들이 우리 위원회 법안만큼은 표결로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걸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각 당에서 가지고 있는 의사가 명백하게 국민들한테 남겨져 있는 사안이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는 것을 의견으로 남기셨지만 얘기를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표결 절차를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왔을 때 다른 이의 한 번 없이 그냥 상정과 의결 절차까지 왔거든요. 그런 점도 여러분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영석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서영석 위원 이 법 처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사소송법의 후속 입법이고 그리고 양당 간에 합의된 법안이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소위에서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을 했고 그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있으신 부분들은 충분히 피력을 해서 속기록에 남겼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소위에서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 건데 이제 와서 또다시 표결 절차를 통해서 입법 처리를 하겠다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 법의 경우는 취약계층이나 노인·아동·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두텁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 형사소송법의 수사·기소를 분리할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형사소송법을 다루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분리된 형사소송법하에서 어떤 후속 입법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표결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교홍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위원장 이만희 김교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교홍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1소위, 2소위 해서 소위에서 우리가 장시간 동안 논의하고 거기서도 반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처리해서 올라온 것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또 향후 이렇게 되면 야당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앞으로 사사건건 소위에서 논의된 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서 표결을 하면 여당이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이런 식으로…… 또 전체회의에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셨는데 위원장께서 이것을 표결한다는 것은 소위가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또 위원님들이 거기서 함께했던 논의 구조가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을 왜 표결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게 표결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도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의견이 나오면 다 건건이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잘 인지하셔서 반대를 얘기하는 분들은 일단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물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백종현 간사님.

○백종현 위원 오늘 상정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 7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 분명한 입장 차이가 확인이 되었던 만큼 위원장님께서 해당 7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사를 확인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 표결하세요, 그러면.

○김교홍 위원 앞으로 사사건건 하자고, 사사건건 해.

○허종식 위원 표결합시다, 표결해! 모든 법안을 다 표결하는 걸로 해. 표결하지요, 뭐 어렵다고 그게.

○위원장 이만희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김기웅 감사님.

○김기웅 위원 감사 아닙니다.

○위원장 이만희 김기웅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표명은 안 하셨는데 반대하신다는 의견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김기웅 위원 예.

○위원장 이만희 다른 분들은 다 제가 확인……

이달희 위원님도 마찬가지로요?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예, 소위 때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소위 때 다 얘기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위원장님 왜 그런 식으로 물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이상하게 하시네.

○권철승 위원 위원장님, 한 분 한 분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이런 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만희 됐습니다.

○김교흥 위원 소위 때 다 했어요, 이것. 속기록에 돼 있어.

○위원장 이만희 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이 직접 이렇게 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 소위에서 한 얘기를?

○김교흥 위원 그러면 소위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소위 때 다 한 것을……

○권철승 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만희 권철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철승 위원 한 분 한 분 위원님 성함을 거명하면서 반대지요, 찬성이지요 이렇게 묻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체회의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다면 표결을 하자 이렇게 위원장님이 방침을 세우시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 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타협한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의가 있다고 그래서 표결하면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찬성입니다,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

○전진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법을 그렇게 하시지요, 모든 법을.

○김교흥 위원 그래요, 앞으로 건건이 하자고.

○조배숙 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은 민생에 관련된 법이어서 저는 대체적으로는 여야 합의가 존중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체계에 있어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런 입법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뭐 모든 것에 대해서 건건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당과 민주당의 어떤 철학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하

게 의사 표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희 이제 그만하시지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다른 상임위 관련 법안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고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이런 표결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시지만 이 보건복지위 법안이 아닌 타 상임위 법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의견을 정확히 남겨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표결 방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권철승 위원 그런 자의적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김교흥 위원 보건복지위에서 다루었으면 보건복지위 법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전진숙 위원 이것 보건복지위 관련된 법이고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권철승 위원 그런 자의적 해석이 어디 있어요?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남겼잖아요. 그러면 된 거지.

○위원장 이만희 표결은 거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김교흥 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진숙 위원 아니, 진짜 위원장님 그렇게 횡포를 하면 안 되지요. 모든 법을 하세요, 그러면!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만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십시오.

○김교흥 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철승 위원 이런 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김교흥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위에서 다루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보건복지위 법이지.

○권철승 위원 발언을 통해서 이미 다 의사 표시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 그렇게 합시다.

○김교흥 위원 다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속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이수진 위원 다른 상임위는 이렇게 안 합니다. 다른 상임위는 전체회의에서 그냥 의결했어요, 위원장님이. 꼭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권철승 위원 우리 이의 제기하지 말고 앞으로 다 그렇게 합시다.

○조배숙 위원 법사위는 아닙니다. 법사위는 안 했어요, 그렇게.

○김교흥 위원 법사위하고 같아요, 보건복지위가?

○전진숙 위원 그러면 법사위 가셔서 하세요!

○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고요.

○이수진 위원 상임위마다 위원장님이 운용의 묘를 발휘합니다, 다른 데는. 우리 소위에서까지 논의를 다 했는데……

○위원장 이만희 진행에 협조해 주세요.

○이수진 위원 그러면 소위라도 안 하셨어야지요. 소위 왜 하셨습니까?

○조배숙 위원 법사위가 가장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 상임위인데도 이렇게 했습니다. 법사위가 가장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도 했습니다.

○전진숙 위원 앞으로 법사위에서 했던 방식으로 저희들도 할까요, 그러면?

○김교흥 위원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 다 이미 남겼는데 왜 그래요, 이것을?

○이수진 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다 끝난 적도 있어요. 그것 다 전적으로 위원장님의 역량입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후속 입법인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상임위에서……

○위원장 이만희 발언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수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이 법안이 타위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노인·아동 그리고 장애인·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조력자라든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주자, 보완을 위해서 만든 입법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일을 잘했으면 우리 사회에 이 힘든 일들이 왜 있었겠습니까? 거대 권력으로서 실제로 검찰의 역할이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뒤봐주는 일 그런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 형소법의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소위에서 토론을 많이 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의견도 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견은 법사위에 가서서 법사위에서 내시면 됩니다.

여기는 노인·아동·장애인·발달장애인의 처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원하고 조력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은 법을 넣은 겁니다. 그 법을 통과시키자는 건데 그걸 통과시키지 않고 타위법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저는 이만희 위원장님께서 이 보건복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동안 저도 예전에 초선 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을 때는 참 많이 여야 간에 다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 와 보니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민생 입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않으면서 참으면서 정부가 제대로 일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신다면 다른 상임위는요? 이 형소법 후속 입법에 대해서 전체회의만 하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퇴장을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또 위원장님이 남아서 의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충분히 논의하고 반대의견 피력해서 속기록에 남기셨는데 이렇게까지 운영을 하십니까? 결국 이만희

위원장님께서 보건복지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가 해 왔던 그런 관례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명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앞으로 협조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그만하시지요, 마치셨습니까.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 이만희 그만하시지요.

○이달희 위원 저는 위원장님 편들어서 얘기하려 했는데, 위원장님 논리를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이만희 간사님하고도 제가 상의를 나눴는데 두 분 위원님들 말씀도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표결에 의한 법안 처리는 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고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 당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견들도 저는 충분히 피력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아까 제가 표결 절차를 얘기했지만 두 분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이 법안들은 그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위가 위원들 이의 제기 있을 때는 법안 처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한지아 위원님, 같은 내용이라면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래도 이것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표결하지 않는다면 의견을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희 제가 취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남기실 의견이 있다는 얘기지요?

○한지아 위원 예.

○위원장 이만희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지아 위원 위원장님, 지금 거대 권력으로 인해서 이 형소법이 개정이 됐다는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거대 권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결국에는 경험한 것을 덜 얘기하고 나쁜 사람들은 잡히고, 그냥 단순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아동, 우리가 가장 보호해야 될 아동들이 본인의 경험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이 법에 대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훈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

○위원장 이만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소병훈 위원 위원장님을 돕기 위해서.

대개 우리 모든 위원들이 간사 위원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사 위원들 간에 합의가 된 것은 여기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처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뭐랄까 내 마음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간사 위원들 핑계대서 간사 위원들 간에 합의된 내용들은 그대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 또 제2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고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후속 법안 다 마쳤습니다.

어쨌든 관련 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 법안 의결 방식에 관련해 가지고도 많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그 의견들이 결코 필요 없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법안 처리 방식은 표결이라든지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법안이 처리될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법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2)
1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6)
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02)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30)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45)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42)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50)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4)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6)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2)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8)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0)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7)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0)
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112)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8)
3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7)
3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50)
3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1)
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1)
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98)
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8)
3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3)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7)
4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50)
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17)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770)
4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3)
4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15)
4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8)

4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67)
4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65)
5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4)
5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77)
53. 예방접종관리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01)
54. 예방접종관리법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8)
55.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
5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4)
5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98)
5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1)
5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6)
6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6)
6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0)
6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92)
6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2)
6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5)
6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39)
6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6)
7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28)
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3)
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5)
7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1)
7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1)
7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5)
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95)

- 7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1)
- 8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7)
- 8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0)
- 8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중헌 의원·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7)
- 8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2)
- 8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207)
- 8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343)
- 8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02분)

○위원장 이만희 의사일정 제13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7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소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서영석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총 39건에서 법안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 3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23건은 통합 조정하여 7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2건에 이어 말씀드리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를 아동의 출생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 박성민 의원, 소병훈 의원, 안상훈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 간주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권 신청의 사유를 확대하는 등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병훈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조사·확인·심사 등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 박용갑 의원,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거급여의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한편 위기상황 발생으로 수급권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급여관리자가 해당 수급자의 급여를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휴·폐업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운 의원, 백종현 의원, 서미화 의원, 전진숙 의원 및 전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약국 개설등록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효력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적합판정 취소 및 효력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하며, 희귀의약품의 무상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전진숙 의원, 최보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건의료상 필수적이고 공급 중단 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회계연도에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지 아니하고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판매업자·임대업자에 대하여 지출보고서 작성·공개·보관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백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장 및 기재사항을 위·변조한 화장품에 대해 판매 중지, 유통방지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불법 화장품의 생산·유통 근절과 수출 규제 지원 등을 위한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를 위조 화장품으로 수정하고 별도의 반품 및 환불 조치 요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사실의 공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현 소위원장께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발표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백종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백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총 63건의 법안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 1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41건은 통합 조정하여 10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7건에 이어 말씀드리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상훈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19세 이후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교홍 의원, 김미애 의원 2건, 김선민 의원, 김태선 의원, 남인순 의원 2건, 백선희 의원, 서영석 의원, 위성곤 의원, 이달희 의원, 이만희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되는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면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되는 기간을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체류자격, 국내 거주기간이나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미화 의원, 소병훈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 의원, 김선민 의원, 윤준병 의원, 이주영 의원 2건, 한지아 의원 2건, 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 장종태 의원, 한지아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 등을 추가하여 심리지원 대상자에 대한 중장기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 의원,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19세 미만 자살자의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를 결합·분석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역정보시스템 정보의 목적 외에 이용 금지 의무자에 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은 한지아 의원, 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예방접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실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관리·구매·비축·생산,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의 신고 및 역학조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중

합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탑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이만희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법안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 과정에서 조금 생각난 게 있어서 복지부장관님과 식약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필수의료기기 지정과 관련해서 법률안이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협의회 구성도 식약처 차장과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공동단 이렇게 해서 공동의장으로 돼 있어요. 지정도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처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지원도 두 분, 주체가 계속 두 분이고 협의회도 공동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요.

곰곰이 고민을 해 보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했더니 약사법에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대로 준용해서 이번에 한다고 해서 넘어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식품의약품처장님은 총리실에 소속돼 계시지요? 소관 소속이 총리실이지요?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두 부처가 사실 아주 긴밀히 연관돼 있고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원만히 잘하고 있다 하시겠지만 총리실에 있는 것과 복지부장관이 중앙부처에 별도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소속, 예를 들어서 두 분들이, 총리실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총리님 지휘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장관님이 또 별도로 동의가……

그래서 공동으로 지정한다는 것도 재밌는 게 공문을 보내거나 할 때 두 분이 병렬해서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문서에 지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이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발송하지도 않을 거고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같이 책임지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분야별로 이걸 저쪽 소관이다, 내 소관이다 해서 막 다투게 될 텐데 그러면 누구 일이냐도 좋은 일은 서로 하려고 그러지만 싫은 일은 서로 안 하시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 보면. 내가 볼 때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혼선과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아요, 말은 못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정안을 냈더니 이쪽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 냈어요?’ 이렇게 하던데……

저는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게 서로 협력해 일을 하되 식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라든가 협의해도 누가 의장을 하고 부의장을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다랄까 이런 걸 통해서 긴밀하게 일을 하게 하되 권한이나 책임은 한쪽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앞으로 소속 문제도 한번 정부조직법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복지부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의료기기까지 확대하게 되는데 각 부처, 기관별로 역할이나 책임이 불명확한 데서 생기는 공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수약품은 먼저 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양 기관의 매뉴얼을 아주 상세하게 만들었습니다. 필수약품 지정과 관리에 있어서 단계별로 이걸 어느 조직의 무슨 과가 어디까지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실행 매뉴얼을 가지고 좀 더 권한과 역할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운영을 시작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운영해 보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약품에서 만들어진 체계를 좀 더 적용해 가지고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처장님, 의견을 내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복지부장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번 약사법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또 개선방안이 있거나 그러면 앞으로 차후 법령에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법안은 다 이의는 없는데, 지금 식약처장님이 와 계시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현안질의를 미프진에 대해서만 하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사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뒤에 현안질의 할 때 미프진 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법안 처리는 하고……

○**조배숙 위원** 법안 처리하고? 그럴까요?

○**위원장 이만희** 이게 잡혀져 있으니까요.

○**조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법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법안 의결에 앞서서 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부터 55항까지에 대한 공청회는……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 그러네요.

아마 간사들께서 지금 협의하고 계시는 법률안이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항이 있어서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김기웅 위원** 최 위원님 오시네. 됐네. 하시면 돼요.

○**위원장 이만희** 오셨네.

의사일정 제53항부터 55항까지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13항부터 14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8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지아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만희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한지아 위원 응급의료 관련 법률 개정……

○위원장 이만희 잠깐만요.

○한지아 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금 복지부장관님께 드려야……

○위원장 이만희 어떤 거요?

○한지아 위원 응급의료의……

○김윤 위원 아직 안전에 안 올랐어.

○한지아 위원 아, 아직 안 올라……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만희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3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0항부터 32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한 양당 간사님 협의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백종현 간사님?

○서영석 위원 처리하는 걸로……

○백종현 위원 의견 기록 남기고……

○위원장 이만희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시간 넣어 드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의결하고자 하거든요.

한지아 위원님, 이 법안입니까?

○한지아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우선수용병원 지정 및 면책은 당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정하는 경우만 있었는데요. 이후 2소위에서의 논의 과정에서는 소방 구상센터도 우선수용병원 지정이 가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 저는 복지부가 기본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의료기관과 협의하면서 사령탑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소방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려들이 있고 의료계와 이송 관련해서 협의 없이 구상센터와만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을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구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증·응급의료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데는 구상센터의 역할과 또 광역상황실의 역할이 각각 다 중요한 상황이어서 구상센터에서도 급한 경우에는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해서 환자를 받고 그다음에 협의해서 최종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전원하게끔 하는 유기적인 관계가 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상실만 가지고서 대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광역상황실은 아시다시피 전원 조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센터가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중증·응급에 대한 신속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아시겠지만 대한응급의학회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복지부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한지아 위원 법사위에 이 법이 갔을 때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복지부와도 소통하면서 이게 효율적으로 가고 안전하게 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함께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의원실과 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이나 아니면 지금 저희가 시도별 지역 이송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잘 담아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응급실 뽕뽕이 그리고 전북 신생아 사망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체계를 잡아야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법이라는 건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파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가역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어서, 물론 2소위를 통과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논의를 더 추가적으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실에도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김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운 위원 응급의료법 관련해서 장관님께 저도 여쭙보겠습니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의 상황에 맞는 환자 이송체계를 만드는 게 핵심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운 위원 복지부가 정한, 예를 들어서 중증환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이송병원을 어디로 갈 건지를 담당하고 준중증환자는 119구급상황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그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운 위원 그런데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바는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의 중앙응급의료센터, 광역응급의료센터를 바이패스하고 그냥 119하고만 상의해서 119 중심의 시스템을 짜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시도지사가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을 분석하고 또 소방 이송 전이나 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별 이송지침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는 응급의료기관이나 소방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참여한 시도의 응급의료협의회나 위원회를 통해서 지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느 정도 책임과 권한을 주는 대신에 법에서, 광역상황실이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역할과 책임과 범위를 명확히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송지침을 이미 개정해서 9월 말까지 개정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요. 법에서 좀 더 근거가 명확해졌고 이번에 시도별 이송지침을 업데이트하면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잘 집행되게끔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운 위원 올 초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호남 지역에서 한 시범사업 모형을 채택해서 이미 시도별 지침을 짜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침을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시도 계획을 승인하는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도가 설사 잘못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부가 그에 대해서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는 이송지침의 원칙이나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도가 시도에 맞는 이송지침을 만들고 그것은 시도의 응급의료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그러한 절차……

○김운 위원 그런데 그게 시도별 응급의료 시행계획의 일부로 들어와서 중앙응급의료위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중앙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운 위원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대학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광역상황실, 복지부와 협조가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119 또 소방 구급상황센터와 협력이 잘 되는 지역도 있어서 지역에 맞게 탄력적으로 협력체계를 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광역상황실이 도입된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지역별로의 역할 분담이나 협력체계는 좀 더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번에 법에 근거가 명확하게 만들어지면서 좀 더 속도를 내서 이송체계에 대한 개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 위원** 일부 지역에서 소방과의 관계 또는 복지부의 광역상황실과의 관계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광역상황실이나 소방의 구상센터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고 그게 마치 일반적인 사실인 것처럼 포장돼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 부적절한 비판을 하는 사례들이 꽤 있었는데요.

장관님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소방청과 응급의료기관이 굉장히 협력적으로 일을 해도 현재 응급의료 자원이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두 기관, 두 센터가 협력해서 지역의 응급의료 이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윤 위원**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의 편향된 의견이 응급의료법 개정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백종헌 간사님.

○**백종헌 위원** 한지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부대의견으로 남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만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해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법안인데 여러 전문가들 내용들에서 의견이 아직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2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일단 의결을 하고 필요하면 다시 개정안을 통해서 미비된 점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한지아 위원이 남기신 그 의견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41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3항부터 46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8항부터 49항까지의 법률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사 대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에 탑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3항부터 54항까지의 법률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

고 의사일정 제56항부터 58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0항부터 64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6항부터 67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71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3항부터 제75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8항부터 제82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5항부터 제86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번안의 건입니다.

8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373)에 대한 번안의 건(한지아 위원 서면동의)

(11시37분)

○위원장 이만희 의사일정 제88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25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번안 의결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지아 의원님으로부터 번안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의 개정 없이 중앙의료원법을 개정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경우 법률 간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새로운 법안에서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번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번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장님, 서영석·백종현 법안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의 법률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자살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담은 자살예방법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법안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매트를 더욱 두텁게 하고 근거에 기반한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실 미수용 개선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의 응급의료법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라도 적시에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 연금보험료 추납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군 복무 그리고 출산에 따른 크레딧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국내 거주 요건을 신설하여 수급 요건을 정비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장애인연금법도 함께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법안을 의결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들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법안소위 서영석·백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과 법안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에 대해 심사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제약사의 희귀의약품 환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인도적 지원이 제도화됩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필수의료기기의 국가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적 위기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심의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으로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방접종의 실시, 예방접종약품, 이상반응 관리 및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결핵예방법 개정을 통해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검역법 개정을 통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국회 지적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제2소위 백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분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89. 현안질의

(11시43분)

○**위원장 이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현안질의 관련해 가지고 양당 간사님들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로비 관련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단 미프진에 대한 현안 의견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 숫자도 제한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위원들이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함에 있어서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양당 간사들께서 합의하신 내용까지 완전히 무시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진행해 가면서, 최대한 합의 내용도 존중해 가면서 또 국민에게 필요한 궁급증도, 식약처 업무 관련된 사항들도 질의로 같이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님 나오셔서 일단 식약처부터 먼저 하고 복지부장관님 보고순으로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 식약처장님을 나중에 이쪽으로 좀……

○**위원장 이만희** 잠깐만. 뭐라고요? 안 들립니다.

○**남인순 위원** 식약처장님이 자리가, 저쪽 가운데로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아, 가운데로 좀 옮겨 달라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1차관 자리로 옮겨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잘 보이십니까, 위원님? 제가 이쪽으로 옮길까요?

○**위원장 이만희** 현안보고 준비되셨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현안은 의약품안전국장이

보고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만희 준비가 안 되셨나요, 처장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아니요, 제가 오늘 의약품안전국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해야 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희 가능하면 처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정확하고 정부의 입장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신중지의약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중지의약품이 그동안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이 심각해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필요성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임신중지의약품 해외직구 불법유통에 식약처가 대응을 해 온 방법들로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해 왔고 또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내 판매자 정보가 특정되는 경우에 경찰에 수사 의뢰해서 약사법령에 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관세청과 협업해서 임신중지의약품 목록을 공유해서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또 별개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도입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로 함께 모여서 임신중지약에 대한 실용적인 사용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26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하였습니다.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조정실,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법제처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신중지의약품 허가 관련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지난 8월 19일 날 나왔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요지는 임신중지약물 허가는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의 유권해석은 수입품목 허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안전성, 유효성 등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식약처가 임신중지약물을 허가하는 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두 번째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여 여러 부처 간의 논의 결과 식약처는 허가·심사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식약처에 신청이 들어온 것은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미프지미소정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로 구성이 되는데 미페프리스톤을 투여한 후 24 내지 48시간 후에 미소프로스톨을 순차로 투여하는 패키지 제품입니다.

관련해서 허가·심사 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업체가 품목허가를 신청하면 제출자료를 심사해서 약사법령에 따른 허가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심사항목으로는 안전성·유효성,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그리고 위해성관리계획 또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기준에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는 관련한 자료들을 안전성·유효성, 품질, 위해성관리계획, 제조 및 품질관리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식약처에서는 일부 자료들에 대해서 추가심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성·유효성, 품질, 위해성관리계획 등을 꼼꼼히 심사하여 허

가·심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허가 이후에 시판 후 안전성 정보 수집·관리를 위해서 시판 초기에 약물 부작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또한 올바른 사용에 대한 리플릿을 마련하여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허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허가 이후에 도입 시기까지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해외에서 만들어져서 수입되는 신약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해외 제조소에서 원료도 확보해야 되고 또 이 약물을 지금 해외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한글로 표시하는 표시 관련해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하검사, 수입자 품질검사 등 이런 업체의 시간인데 이런 업체의 시간까지 고려해서 내년 1분기까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식약처에 관련한 내용들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장님, 제가 현안보고를 다 드리는 게 좋으실까요? 아니면 지금 실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방침을 먼저 주시면…… 아 마 협의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현안보고를 실장이 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게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그래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실장이 보고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장님!

현안보고드릴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식약처가 허가될 경우에 인공임신중지약물을 도입했을 때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사항에 포함된 내용과 또 위해성관리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의료계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으려고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안전 논의 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 것처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님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임신중지약물의 의사 조제 허용 관련입니다.

현재 형법상 약사의 낙태죄 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국외 사례나 여성의 안전 고려 시 약물 도입 초기 일정 기간 동안은 의료기관 내 투약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약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형벌배제 대상에서 미포함돼 있었

습니다. 따라서 약사는 약물 조제나 판매 시에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도입 초기에는 약물의 효과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내 사용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약품의 품목허가가 이루어진다면 관리방안으로 약사법 고시 제정을 통해서 의약분업 예외 항목으로 임신중지약물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적용기간은 2년으로 설정하고 기간 내 형법이 개정되지 않거나 의약분업 예외 유지 필요 사유가 발생된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원외처방 및 약국유통 관리 내용입니다.

고시가 제정되더라도 의사의 원외처방 및 약사의 조제 제한의 법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따라서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약사의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원외처방 및 약사의 조제 제한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제도 정비 시까지는 약 공급을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심평원을 통해서 주기적 공급 내역도 점검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급여 약제 가격 공개 등 모니터링입니다.

비급여로 사용될 임신중지 약물의 가격 공개 및 과다비용 청구 방지입니다. 의료기관을 통해서 미프진의 원내처방과 조제하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서—고시 개정이 필요합니다만—대국민에게도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위해서 진료 전에 환자에게 대상 항목과 가격을 설명토록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진료내역 확인 및 필요 시 현장 점검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 사용 환경 조성입니다.

약품 허가 직후 일정 기간 원내처방과 조제만 가능한 상황에서는 안전한 약물 임신중지 진료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작용 모니터링도 필요하고요. 이에 의료계,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서 임신중지약물 허가 시에 허가내용 그다음에 위해성관리계획을 기준으로 안전사용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표준지침 마련과 약물임신중지 관련된 의료인 그다음에 기관 대상으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진료 역량을 구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입니다.

현재 형법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 입법 기한이 도과했습니다. 현재 입법부작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주요 쟁점별 이견도 많은 상황으로서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요 쟁점에 대해서 모자보건법 개정 시 국회와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현안보고들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질의순서까지 조금 합의하신 내용 같아 보이는데 가급적 김운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달희 위원님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인순 위원님 하시고 전종덕 위원님 하시고 조배숙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김운 위원 장관님, 이게 외국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안전하게 쓰여 온 약물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약품으로 권고하고 있는 약물인데 이걸 비급여로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일단은 급여는 제약사가 먼저 급여신청을 해야 급여검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약사의 의향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일단 허가가 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비급여로 우선 사용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운 위원 그런데 필수적인 의약품인 경우에 복지부가 직권등재를 하기도 하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런데 저희가 직권등재하는 절차는 진행한 사례가 많지 않아서요. 일단 제약사의 급여신청을……

○김운 위원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복지부가 이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마치 이 약물을 비급여를 전제로 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어서 제약사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직권등재도 고려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국민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급여적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세부적인 검토와 의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김운 위원 거처서 보험을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서 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계의 우려 중의 하나는 굉장히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의료진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예를 들어서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처방된 약물의 경우 그와 관련해서 정부의 행정규칙만으로 의료진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복지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법적인 책임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허가된 약품을 처방했을 때 형법상의 낙태죄에 해당하는 처벌에 대해서는 이미 위헌판결이 나서 실효된 상황이기 때문에 약의 처방 자체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명확한 정부의 방침이고요.

두 번째는 의료행위로 인해서 생기는 의료사고나 의료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다른 모든 의료행위하고 동일한 의료법상의 조항이 적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운 위원 외국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응급개입이 필요한, 그러니까 응급조치가 필요한 부작용의 발생률이 10만 명당 4건 정도에 불과해서 발생 빈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물론 발생 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현재는 저희가 안전 사용 방안 만들 때 중증의 부작용이 우려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만들 예정이고요. 처방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응급의료를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처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윤 위원** 의료진들의 우려를 복지부가 해소할 수 있도록 상세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저희가 산부인과학회나 의협이나 의료계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안전 사용에 대한 여건 마련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산부인과학회 의사들의 또 다른 우려는 산부인과 의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 약물의 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역량 안에서 의료행위를 정하는 거지 그걸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응급의료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약을 처방할 건지 말 건지를 충분히 결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모자보건법에 의사의 선택권에 대한 부분을 담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모자보건법 개정할 때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저희도 바랍니다.

○**김윤 위원** 개정 전이라도 사업지침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에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우선 미프진 도입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님하고 식약처장님하고 두 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요.

저는 임신중지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임신중절로 알고 있는데 언어를 이렇게 부정확하게 쓰는 것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낙태가 합헌이라는 것이 아니고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보호권을 조화하는 의미에서 낙태죄를 개정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조배숙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 모자보건법이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의 제한적인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조배숙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약사법 68조 4항에 보면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현행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태죄가 개정이 되지 않아서 입법의 공백상태인데……

지금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것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을 쓰면 태아가 죽습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과 태아의 생명에 관한 사항 이것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단순한 약품 허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률로 해야 될 것을 행정부가 우회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것은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이것 굉장히 위험한 거지요. 그리고 또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 침해당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는 민주당 위원님들도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장님, 지금 낙태 약물은 한국 여성이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가교 임상시험을 해야 됩니다. 한 번도 안 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가교 임상시험을 하지는 않았습시다만……

○조배숙 위원 않았지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허가를 강행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저널에 보니까 미국 FDA도 이 미프진의 위험성 논란으로서 지금 안전성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식약처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넨셀 이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이 제넨셀이 햄스터 다섯 마리를 실험했는데 실험 결과 한 마리가 폐사했고 나머지 개체에서도 토혈과 폐비대증으로 이상소견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리한 실험보고서를 누락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약처를 속인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상 승인이 난 뒤에 제넨셀에서 뭘 했느냐? 보건복지부에 R&D 신청을 했습니다. 다섯 번이나 했어요, 21년 12월부터. 그런데 다섯 번 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거부했어요. 왜냐? 비임상 동물실험에서 유의미한 유효성 자료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똑같은 사안인데 식약처는 임상 승인을 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걸 몰랐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임상 승인 이후에 임상을 하면서 국내 코로나 환자 93명에게 실제 투약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햄스터가 폐사했는데 이 동일한 성분을 가진 것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발각 되집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후에 이 93명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정말 국민한테 사과도 하고 재발 방지할 대책도 뭔가 마련을 해야 되고요. 이 93명 중의 1명이라도 어떤 이상 사례가 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식약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위원님, 일단 미프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고 임상 관련해서는 이게 88년부터 세계적으로 100개국 정도 사용이 됐는데 일본, 아시아, 유럽, 미국……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에 의해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시다. 이게 나중에 허가까지 이르게 될 때 가고 임상시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그 자문 결과에서는 이게 오랫동안 사용됐고 그랬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가고 임상시험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저희가 확보된 게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일단 가고 임상시험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미국 FDA 관련해서는 미국 FDA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비대면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원격배송을 하는 형태로, 우리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지금 미프진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에서 이게 금지가 돼도 원격배송이 되면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 유통경로의 특이성 때문에 지금 시판 후 안전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체계하고는, 우리나라는 아직 비대면이나 원격배송을 도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판 후 안전성 조사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자문위원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그래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고 전문가분들이 모인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도 판단하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을 때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고 임상시험 건 관련해서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도입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분들께서 일단 이것은 그동안 사용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넨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위원장 이만희**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라도.

○**조배숙 위원** 답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제넨셀 관련해서는 식약처에서 21년도에 심사했을 때는 몰랐던 사항이고 24년 12월에 판결문이 나와서 그 판결문을 보고 식약처에서도 파악을 하게 된 사항인데. 위원님 지난번에 판결문 다 보여 주신 것처럼 그 판결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넨셀에서 코로나를 감염시킨 햄스터 다섯 마리에 약물을 투약했을 때 한 마리에는 토혈이 있었다, 이 토혈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문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 마리는 토혈을 하지 않았고 다섯 마리 중의 한 마리가 토혈을 했다는 사실을, 이 한 마리가 토혈을 하면서 죽었다라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알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유효성 시험에서 용량을 증가시키면서 일어난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논의한 것처럼 앞으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개선사항을 정말 심도 있게 마련을 하려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93명에 관련해서는, 이게 임상 2상입니다. 그런데 임상 2상은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보는 시험인 거고 임상 2상을 하기 전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하는 안전성 임상시험 1상이 있는데 제넨셀에서 제출했던 자료에는, 지난번에 서영석 위원님께서도 이것 한번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이미 제넨셀에서.....

○위원장 이만희 정리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임상 1상을, 안전성 시험을 하고 임상 2상을 했고 아직까지 그 부작용 숫자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 어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신중지 의약품에 대한 도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임신중지 의약품이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또 WHO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필수약품 목록에 포함시켰잖아요. 그래서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FDA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0.05%, 그런데 이 0.05%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항생제나 진통제 이런 것에 비해서 더 높은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일반적인 수준의 부작용 보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다른 전문의약품에 비해서 더 높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복지부가 해야 될 일은 미프진의 도입 허가나 심사 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하겠지만 이것을 실제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브리핑 때 보니까 처방자를 특정 전문의로 한정하지 않고 역량 중심으로 학회와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하다 보면, 지금 사실 산부인과 취약지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직장인 양육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의료기관 방문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장벽이 될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원내 처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벽 때문에 사실상 여성들의 접근이 제한돼서 별로 실효성을 못 봤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저희가 보고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전문과목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정도의 역량이 있는 데가 처방할 수 있다라는 역량 중심으로 기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그런 역량이 없는 경우에는 안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역량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의사의 처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지정의사제 같은 게 이미 법에 규정이 있다 보니 기관을 지정하고 있어서…… 저희 현행 법 안에서 수행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학회, 의료계하고 좀 소통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물론 신청을 해야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이 약제비만이 아니라 검사라든가 진료라든가 또 추가적인 수술이라든가 이런 전체 진료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와 동시에 급여화에 대한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임신에 대한 진단과 임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은 건강보험하에서 치료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적용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은 급여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급여 적용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래서 이후에 의약품 허가와 함께 법적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모자보건법 또 형법 또 아마 약사법도 좀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법 정비에 대한 계획은 올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정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형법에서의 처벌조항과 모자보건법이 같이 개정이 되는 게 적절한데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을 같이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자보건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을 이미 많이 내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그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계속 의견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회 심의에 열심히 자료제출하고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식약처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제처 해석을 조금 더, 그 이전에 사실 이미 식약처가 전문가 판단을, 법률 해석을 6건이나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 그러면 법제처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식약처가 진즉에 할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건강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허가심사 관련해서 언제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위원님, 허가심사라는 게 업체가 위해성 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안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보안을 잘해 오는 것에 따라서, 만족할 정도의 보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면 허가 일정을 딱 몇 월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허가를 한 다음에 또 업체가 수입하는 절차까지 최대한 당겨서 내년 1분기까지는 도입되게 하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인순 위원** 수입하는 절차 말고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그러니까 그 허가라는 것이 저희가 일정을 딱 정해 놓으

면 그 업체는 자료를 대충 보완을 해도 허가를 해 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허가 일정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업체가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야지, 저희도 심사가 저희 수준에 맞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인순 위원** 제가요 그 얘기를 쪼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식약처가 신뢰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7년 동안 방치되어 온 책임의 주체입니다. 식약처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신뢰감을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정을 밝히려는 얘기가 아니라 최대한 이것을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위원님, 저희도 최대한 성실하게 꼼꼼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손을 듭)

○**위원장 이만희** 잠깐만요.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 차례가 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종덕 위원**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에 임신중지 약이 정식 도입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입이 확정된 이후가 더 중요할 텐데요.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돼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지금 도입 초기 2년간 원내 처방과 원내 조제를 원칙으로 했는데요. 원내 처방·조제 원칙은 이용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제도 도입의 취지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 공백을 이유로 원내 제조라는 우회의 방법을 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담은 여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원내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용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 낙인효과도 있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음성화를 부추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용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비급여로 하겠다는 건데요. 가격 공개나 진료 공개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셨지 않았습니까? 보고를 하셨지만 결국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의료 가격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약값도 검사비도 모두 비급여 하게 되면 결국은 이용자가 실질적 부담을 가져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제도 도입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경우도 원내 조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임신중지 약물의 이용률이 전체 인공임신중절의 1%밖에 해당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런 상황을 답습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서 사전 초음파 검사라든지 약값 등을 포함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요. 검토 시한이나 결과 발표 시점을 언제쯤으로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건강보험은 일단 약제에 대한 허가가 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제약사가 급여 신청을 하고 급여 적용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급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도 좀 더 사회적인 논의와 건정심의 검토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이용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할 문제가 아니라 사전 검사 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복용 후에 사후검사까지 포함해서 약값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진료 비용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을 정해서 이때 정도까지는 발표해야 된다는 약속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글쎄요, 일정을 약속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종덕 위원** 대략 발표 시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이런 시술과 관련해서 의료적인, 신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결정 허가 절차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급여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전종덕 위원** 이용자들의 이용을 확대하고 진료비 부담을 덜어 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방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전종덕 위원** 제가 전자에 원내 조제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도입 취지 자체를 훼손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회적 결정을 한 이유가 결국은 법적 공백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7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이 문제, 법 정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우회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여성의 건강에 가장 초점을 두고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약품 도입의 첫 입장이기 때문에……

○**전종덕 위원**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문 주시면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제가 앞에서 전제했지만 결국 이런 방식은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 가지 요인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성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했는데 결국은 기존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 미비로 인해서 원내 처방을 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를 해 왔던 그 책임이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장관님이 적어도 진짜 2년 안에는 책임지고 법적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원내 처방이라고 도입을 하게 된 건 물론 전문의약품이어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약물의 부작용 자체는 없지만 도입 초기에는 약물로 인해서 불완전한 배출이나 이후에 어떤 의학적인 처치 같은 것들이 필요한 비율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안정적인 도입 체계와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안전 위주의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부수적으로는 약사법 위헌 가능성에 대한 입법 공백도 같이 고려할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안이 제가 알기로는 21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제출이 되었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의해서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용자들이 부담 없이……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밀 대책을 제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접근성도 잘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현안질의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손을 여러 번 들었는데 무시당했습니다. 꼭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현안질의를 같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만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달희 위원** 자리를 이석한 부의장님께서도 식약처에 대해서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멘트도 주시고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법적 체계를 갖추기 전에 식약처가 서둘러서 하는 이런 행정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식약처의 행태에 대해서 오늘 강력하게 질타를 좀 하면서 저의 현안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전체회의를 하였고 전체회의에서 다섯 가지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러면 그게 부실하든 안 부실하든 최소한 이 회의에 오기 전까지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요. 이런 식약처의 행위가……

이건 꼭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을 보건복지위로 가지고 와서 현안에 대해서 질타하고, 이 문제를 떠나서 도대체 국회의 입법 과정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얼마나 무시하면 공개적으로 요구한 이런 자료의 피드백도 없이 이 회의에 식약처장이 버젓이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이런 의회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지금 전 국민들께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 약, 전부 이 안전성에 대해서 식약처

의 이런 절차 과정이 확실히 안전성을 그리고 그런 약의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가지는 타이밍입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간곡하게 요구합니다. 일체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식약처의 약품 승인과 그리고 식품 허가라든가 이 절차에 대해서 현안질의 하루 개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만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당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지요.

○이달희 위원 장관님, 저도 행정부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행정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법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법적 근거……

○이달희 위원 그래서 공직자들이 저희 방 방문할 때도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여기가 법 공장인데 국민 시각에 맞춰서 법을 개정이나 제정해 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협의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7년 동안 여러 정부를 거쳤습시다마는 미뤄진 거는 법이 없어서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법적 공백이 길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의 말씀은 그러면 법 위에 있습니까? 올해 26년 7월 14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여성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다들 받아서 ‘법 개정 전이라도 미프진 처방 허용 추진’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법제처에 근거를 둡니다. 질의하니까 법제처에서 식약처가 이 부분 아까 식약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허가해도 된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 입법조사처는 9월 3일 날 김상훈 의원실의 제출보고서에 의하면 낙태죄 입법, 모자보건법 개정, 품목 허가는 동시에 진행돼야 하며 행정부 단독 허가는 사실상 국회의 입법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권이 분리돼서 일을 할 때는 행정 공무원들은 입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러면 ‘신호등 다 끄고 자동차 막 달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다 끄고 막 달리면 됩니까? 이런 것처럼……

국무회의에 장관님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들어갑니다.

○이달희 위원 식약처장님은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복지부장관님, 민주당이 지금 여당 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달희 위원 당정협의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안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런 여성의 건강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국회에서 보고하듯이 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하시면, 입법이 안 돼서 그러면 당정협의를 거쳐서라도……

지금 민주당 여당이 다, 오늘도 아까 겁박하셨어요.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다…… 그리고 앞으로 건건이 한 건 한 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자 이렇게 막 하시는데 겁이 철렁 났어요. 그러면 우리 야당은 아무것도 못 하겠네?

그런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법들이 다 통과가 되는데 이럴 때는 대통령께서 삼권을 무시하지 않고 행정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갈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당정협의를 거쳐서 이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이고 정책이면 여야가 법을 먼저 고치고, 모자보건법·형법 2개 고치고 식약처와 복지부가 나서서 이 정책을 실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 국무회의 때 내 보셨습니까, 안 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이달희 위원** 하명만 받습니까? 이걸 청탁 승인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모시는 거예요? 이걸 법을 조율하는 우리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입법조사처에서는 동시에 해야 된다는데, 법제처가 위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답변드려도……

○**이달희 위원**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견 내셨는지 두 분, 식약처장님 그리고 복지부장관님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약물 허가에 대해서는 이게 모자보건법상 약물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약사법상 안전성·유효성을 근거로 약품을 허가할 수도 있다는 법률적인 해석을 한 거고 그것이 법을 위반하거나 법을 초월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달희 위원** 식약처장님, 그러면 이것 몇 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이 주수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달희 위원** 현재에서 지금 몇 주나 이런 것 다 법에 넣으라고 돌려보낸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업체가 임상자료에 따라서 9주까지로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는 업체의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달희 위원** 업체의 자료가 국민의 안전과 입법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장관님,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은 임상시험 근거를 가지고 의약품을 허가할 때 9주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후에 모자보건법이나 형법을 개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만들 건지, 허용 주수나 이런 것은 의약품의 허가 범위랑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달희 위원** 대통령께 두 법을 개정하고 난 뒤에 이 정책을 실행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는 내부적으로 법률을 검토하고 또 지금 현재 굉장히 불법 의약품으로 여성들의 건강에 위험을……

○**이달희 위원** 7년 동안 끌어 오던 일인데 불법적으로 이렇게 법 위에서 대통령 하명 한 번 하신다고 바로 초스피드 내는 게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러니까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달희 위원** 국회에 와서 법을 고치고 해도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위원장 이만희** 정리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초월해서 이런 조치를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만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하지만 모자보건법은 신속하게 개정이 돼야 되고 7년간 입법 공백에 대해서 정부도 책임을 느끼고 있고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하고 답변하시는 장관님을 포함해서 가지고 오늘 사실 회의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데 운영하는 사람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다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저도 현안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 1년 동안 간사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확인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전에 후보로서 여성 공약,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된 공약으로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여성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만들 때 관련해서도 의견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20·30 여성들 입장에서 미프진 도입에 대해서 이미 외국에서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불법적으로 효능이 없는 약을 수입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한 여성 건강권의 침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년에 걸쳐서 미프진 도입이 필요하다. 법을 통과, 모자보건법이나 형법 통과 전에도 건강권 차원에서는 이미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100여 개 나라라고 제가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7월에 발언을 하신 바는 있습니다만 이미 그 이전에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전반기에 국정감사 때라든지 또 지난 8월 현안질의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식약처장께서 계속해서 논의 중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

을 계속 고수하셨어요. 이제 이걸 번복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장도 분명하게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지난 2년 동안 있으면서 다시 또 저희가 후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처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법 개정하고 추진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고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물 도입이 지연된 것과 식약처의 입장을 둘러싼 이 논란은 현재 식약처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식약처가 최초 법률자문을 받은 시점, 벌써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식약처가 위원들의 그동안의 지적을 좀 무겁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냥 허송세월한 겁니다. 저는 그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라도 추진되는 만큼 신속하게 약물 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된다.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니고, 당정협의 안 한 것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현안질의라든지 국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얘기하고 진행됐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매우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이만희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 처장님, 제가 방금 의사진행발언 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처장님의 그런 자세들 때문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질타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그동안 식약처는 이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는 했는데, 그렇지만 또 해외 직구 같은 불법유통 안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법 개정 이후에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실용적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제라도 추진되는 만큼, 늦어진 만큼 더 신속하게 약물 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셔서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제가 참 지난 대정부질문을 들으면서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마약을 하는 국민이 있다고 마약을 풀자는 것과 미프진을 풀자는 말이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필수약품으로 지정했습니다, 미프진을. 그런데 이것을 마약에 빗대어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선동하는 이런 정치, 이건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WHO가 마약상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부장관님, 윤용근 의원의 이 대정부질문 질의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들었습니다.

○이수진 위원 마약과 같은 것 아니냐는 이 윤용근 의원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적절하지 않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진 위원**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국민의힘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 변화와 사회 각계의 재요구들을 검토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하는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에 주어진 겁니다. 저는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거나 임신중지 약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는 여성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런 행태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법하에서는 의약품의 허가 절차에 따라서 임신중지 약물을 승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 법제연구원 자료뿐만 아니라 기존 법률자문 다수가 이러한 취지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보완적인 입법을 통해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이 된다면 현재의 수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방법에 의학적 상황을 반영하고 또 지금과 같은 논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완 입법을 빠르게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동의합니다.

○**이수진 위원** 장관님, 어제 정부 브리핑에서도 이야기 있었지만 현재의 입법부작위 상태 지속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동의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지역, 주거지 근처가 70%라고 돼 있고요. 주거지와 가까운 타 시도가 20%에 이릅니다. 즉 임신중지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접근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본의 사례도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성의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아주 많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나 여성이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고 싶어도 접근성 문제 때문에 처방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문제도 그렇고 또 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취약계층 여성의 접근성 문제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비급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건정심 논의 등을 통해서 절차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질 높은 임신중지 의료를 단순히 의학적으로 안전한 의료로만 정의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하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지리적 접근이 가능하고 형평성과 당사자 중심성을 갖춘 의료여야 한다, 특히 임신중지 의료가 여성에게 경제적 곤란을 초래하지 않아야 된다, 다양한 의료 전달 방식과 자가 관리를 포함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하고자 하고 있는 제도가 약간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첫발을 내딛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문제들을 해소하고 이 쟁점을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기되었던 쟁점사항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전반적인 사용에 대한 접근성이나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용 방안에 대해서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허가해서 처음 도입하고 저희가 진료 역량이나 사용에 대한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자료들이 쌓이면서 좀 더 개선을 해 나갈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한 도입과 사용에 집중해서 초기에 대한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말씀 주신 사항들은 고려해서 사용계획에 대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수진 위원님 질의 과정에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우리 당의 윤용근 의원님 말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급적 상대방이 있는 자리에서, 반론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언급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지금까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잘 안 하셨습니다. 의원에 대한 질의는 국민들께서도 판단하시는 면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아니, 그 당의 대변인 아니신가요? 본인이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만희** 대변인은 아니지만 우리 국회가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있었던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 한지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지아 위원** 장관님, 지금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낙태약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거부라든가 아니면 보험급여에 있어서는 아시겠지만 보험급여를 우리가…… 급여자, 보험자들이 이거를 다 비용을 분담하는 이유는 치료와 그런 목적에 있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험급여는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거를 믿지 않는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급여화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급여는 또 급여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지아 위원** 식약처장님, 2023년도에도 식약처장님이셨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그렇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미프진 허가에 대해서요. 그랬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한지아 위원 같은 법체계에서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이 달라진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의 해외 직구로 지금 굉장히 안전성 문제가……

○한지아 위원 그거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계속됐던 사안이어서요.

식약처는 안 그래도 김승원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임상 청탁 문제로 국민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국회의원 한마디, 대통령의 한마디로 기관이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인 기준, 법의 기준 그리고 전문성의 기준으로 가야지만 되는 대표적인 곳이 식약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한지아 위원 의약품이나 임상시험의 승인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승인 여부 하나로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고 투자가 늘어나고 상장회사의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판단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고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특정 기업의 특정 임상시험을 두고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신속 처리를 부탁하는 것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위원님, 저는 없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통상적인 민원 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그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 민원일 수도 있고.

○한지아 위원 그러면 특정 기업의 특정 임상시험을 두고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신속 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민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식약처장님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제가 지금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한지아 위원 김승원 후보자께서 한 행동은 저는 청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약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과학을 기반으로 미프진도 그렇고 모든 정책을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승원 후보자 행동으로 인해서 식약처가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 사기꾼은 체넨셀 주식을 팔고 63억을 얻었고 세종메디칼 투자로 4만 명의 개미투자자들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경험했고요. 임상시험 승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유효성이 부족하다는 복지부의 판단이 있었는데, 의견이 다른 거지요. 그런데 93명에게 그 약은 투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기관장의 중립적인 입장이 그때그때 정치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봅니다, 효과적인가, 또한 그 약이, 그 물질이 안전한가. 효과를 먼저 보면 복지부에 의하면 체넨셀 물질은 동물실험에서 조차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실험에서 치사율이 20%였던 거지요.

장관님, 당시 코로나19 때 누적 치명률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계속 시간대별로 달라져서요 제가 최종 건은……

○**한지아 위원** 저도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지만 0.8% 수준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시기별로 좀 바뀌었습니다.

○**한지아 위원** 예, 시기별로 많았을 때는 2%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물에서 효과가 미흡한데 코로나 쥐에서는 치사율이 20%, 물론 사람의 코로나 치명률과 햄스터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민하게 될 지점들이 많거든요. 이런 물질이 93명에게 투여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제가 그 임상시험에 제출된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저의 의견을 드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

○**한지아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하십시오, 식약처장님. 이걸 공개 안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의혹이 있는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이만희** 그래요. 하십시오.

○**이수진 위원**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이만희 위원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타 의원의 이름을 호명하고 이 자리에 없는데 질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로요—필요하면 민주당 의원, 그 자리에 없는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특히나 법적으로 조사 중이거나 법의 판단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기는 부적절한 얘기 같은 것들도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정부질의에서 본인이 얘기한 거를 토씨를 그대로 옮겨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셔야 될 위원장님께서 여당 위원인 저에게는, 위원장님께서 야당의 위원이시기 때문에 차별을 하고 차별을 해서 저한테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도 여기가 법사위도 아니고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이미 충분히 얘기가 됐는데 후보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그리고 지금 현재 동료 의원이기도 합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현안질의가 아닌 또 다른 질의를 엮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운영하실 때 여당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계속 지적을 하실 것인지도 그리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원만하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희** 이달희 위원님, 같은 내용인가요?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만희** 하십시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게 저희들 옛날에, 행안위에 제가 2년 동안 있다가 왔는데 동료 의원들 간에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금

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자리에 없고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한 내용의, 여기에서 해명도 할 수 없는, 물론 워딩을 그대로 갖고 오셔서 각주를 달아서 하자면, 우리 보건복지위 안에서 정쟁을, 오히려 다른 상임위 것 가지고 와서 하자면 민생 챙기는 위원회에 얼마나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동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의 그런 의사진행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전종덕 위원 저도 의사진행……

○위원장 이만희 전종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전종덕 위원 저는 제가 야당도 아니고—저는 야당이지요—민주당도 아니고 국의힘도 아닙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들어 봐도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이후에는 의사진행을 공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의 의정활동의 영역입니다. 저는 누구든 간에 어떤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보시는 국민들의 몫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한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원활한 의사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서는 공정하게 또 위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반영하는 방식으로 회의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희 제가 세 분의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게 말로 하는 겁니다. 위원회 말을 막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첫 번째, 그분이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그분들의 말씀을 최대한 들을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A는 질의하고 B는 하지 마라, B는 하고 C는 하지 마라 이런 제한을 두는 것도 저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또 어떤 얘기를 하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사실은 평가하시고 그 질의의 유용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 또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안질의에서 이번에 미프진 현안 했으니까 미프진만 질의해야 돼 이런 것도 저는 맞지 않고 심지어 숫자를 3 대 3 대 1로 하자는 그 내용도 사실은 제가 동의하기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두 분 간사님들이 그렇게 합의를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존중한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갑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더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금 이수진 위원님께서 여기 자리에 없는 동료 의원을 거론했다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지아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

로 회의를 좀 공정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한 분은 장관님 되시려고 검증을 받는 분이고요 한 분은 대정부질문에서 본인의 생각을 피력한 사안입니다. 그걸 똑같은 상황에 놓고 이것 하면 안 되니까 저것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수진 위원** 아니, 그게 왜 다른 상황입니까? 우리가 법사위입니까? 왜 장관 검증을 여기 보건복지위원회가 합니까, 위원장님? 그게 왜 다른 상황입니까?

○**이달희 위원** 식약처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잖아요.

○**이수진 위원** 그러면 식약처에다 검증하실 때, 식약처에 질문하실 때 이름을 빼고 질문하시면 돼요. 그동안 다 하셨으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이만희** 가능하면 발언 기회를 얻으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 기회 드릴까요? 발언하시려면 제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이제 와 가지고 그러면 위원장님이랑 저랑 남아서 옥신각신할까요? 그러면 발언권 얻어서 옥신각신할까요, 한 시간 정도?

○**위원장 이만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는 거는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막는 거는 사실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발언하실 게 있으면 발언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만희 위원장님께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막는 것은 좋지 않다. 이제 저희가 10월에 국감도 있을 텐데, 그러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간사 간에 어떻게 회의 일정을 잡고 시간을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위원들,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여당 위원은 여당 위원으로서 본인들이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 줍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위원장님 소신이 있고 위원장님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시면……

지금도 저희가 10시에 시작해 가지고 1시입니다.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고 아마 위원님들도 약속이 있을 텐데, 저도 약속이 있는데도 안 가고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전에 표결을 해야 되니 어쩌니 계속 옥신각신 하시면서 늦어졌고 이런 것들을 오전 질의시간에 맞춰서 저는 양당 간사 간에, 여당 위원들의 숫자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존중해서 야당에도 3명을 배정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렇게 진행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본인 소신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저를 뽑은 국민들을 위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쟁으로 몰고 가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초선 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2년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료 위원인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수년에 걸쳐서 결과가 났지만 보수 언론이랑 같이 작당을 해서 갖고 끊임없이 질의하고 끊임없이 이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민생 현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료 위원들을 모욕하시더라고요.

우리 국회의원들, 물론 법적으로 본인들 발언한 거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국민의힘도 그렇고 상임위별로 특성도 그렇고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눈치 봐 가지고 위원장이 그렇게 지적을 했으니 앞으로 얘기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역할과 각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그게 국회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저만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도 야당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위원들 있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발언하실 것 아닙니까? 각자의 역할을 맡게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 관련된 민생 현안을 다루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의사일정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이만희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미프진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 법적인 개정이 우선이다, 또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그 이후에 품목허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마치 이쪽에서는,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동안 협의를 쪽 해 왔는데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들이니까, 아니면 국회에서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까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또 모자보건법하고 관계없이 약사법에 따라서 약물 허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물에 대한 도입도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서 성평등부가 계속 진행해 왔던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이만희 전반기에 이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나 토론회 또 아니면 법안 관련해 가지고 모자보건법 개정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정부 내에서는 계속 논의를 해서 정부의 수정안들을 계속 다듬어 왔었고요. 법 개정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 왔고 저희도 식약처……

○위원장 이만희 정부 측에서도 모자보건법 관련해 가지고 제출한 안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정부안을 제출한 거는 없습니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여러 건, 지금 자료에 첨부해 드린 대로 많은 안이 제출이 됐고 또 다양한 세미나나……

○위원장 이만희 가능하면, 이 말이 잘 안 맞잖아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또 정부에서 계속 논의를 해 왔다, 그런데 한 번도 국회에는 관련된 법안을 정부가 의견을 제출한 적은 없다. 이 문제는 그러면 본인이 주장하는 거하고 해 왔던 행동과 일치하지 않잖아요. 지금이라도 정부 측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시는 게 필요하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식약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문가 그룹들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낙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정이나 또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복지부에서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는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모자보건법은 복지부가 주관하고 추진해야 되는 법입니다.

○위원장 이만희 그러면 본인도 제대로 된 역할들을 다 못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늦었

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회에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장님, 저희가 아마 21대 국회에는 정부안으로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제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법안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후에 22대 국회에는 정부안으로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의원입법으로 많이 발의된 상황이어서 그 법으로 정부 의견을 해서 입법을 하는 것도 진행하지만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도……

○**위원장 이만희** 그러면 지금 제출된 법안 중에 어떤 게 정부 측에서 의견을 의원입법으로 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들이 내 주신 거고요. 그 법을 종합해서……

○**위원장 이만희** 그러니까 한 건 없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쟁점별로……

○**위원장 이만희** 본인들이 정확하게 의견들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국회 내에서도 앞으로 여야 간사님들께서 이런 공론의 장, 토론의 장들도 같이 열어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식약처장님, 미프진 관련해 가지고 기속행위라는 말에 엄청나게 본인들이 봐줄 수밖에 없네 이러면서 그냥 위촉된 모습들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본인들이 고시 내용에 기속된 사항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스스로 그냥, 이쪽의 법제처에서 글자 문언에 따라서 그대로 기속행위로 본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식약처는 나름대로, 물론 세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용에 대한 저거도 있기는 하지만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일정하게 적합한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해 줘야 된다 이런 식의 고시 내용은 조금은 다시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위원장님, 이게 유권해석이라서 정책 방향에 참고가 되는 법제처의 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속되게 문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기속행위라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꼼짝 못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마찬가지로 법제처의 해석도 일단 고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한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임신중단에 대한 허용 주수라든지 또 사유, 절차 이런 것들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남겨 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그리고 입법조사처도 같은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 국회가 막혀서 그동안 일 못 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국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다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복지부장관님하고 두 분한테 다시 한번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여당 입장에서는 당

정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걸로 제가 사실은 전제를 합니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위원장한테조차도 발표 10분 전에 오서 가지고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정부로서의 태도도 아닌 것 같고 국회를 너무 가볍게 보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두 장관님과 처장님한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식약처장님, 제넨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관에서 임상이 이루어졌고 그때 임상이 된 93명의 관계자, 피해자분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파악된 게 있는지 이런 걸 상세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 자료 요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위원장님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현안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아까 이달희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안질의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안질의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산회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초에 국정감사계획서 채택할 예정이었습시다라는 그 일정과 관련해서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국정감사 관련된 안건은 9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조배숙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9월 24일까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많이 늦었는데요 다음부터 운영에 좀 더 세밀하게 다음 회의 때는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권칠승 김교홍 김기웅 김 윤 김태호 남인순 박용갑 朴芝源 백선희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달희 이만희 이소희 이수진 전종덕 전진숙 조배숙 최보운
한지아 허종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신은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제1차관 현수엽

제2차관 이형훈

기획조정실장 김국일

사회복지정책실장 진영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손영래

건강보험정책국장 유주현

보건산업정책국장 성창현

인구아동정책관 김현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차장 김용재

기획조정관 우영택

의약품안전국장 신준수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차장 김기남

기획조정관 장호연

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보고사항】

○의안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0.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9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0.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9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 9. 10.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29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0. 광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11)

이상 4건 9월 11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1.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1.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1.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40)

이상 3건 9월 14일 회부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4.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6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4.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65)

이상 2건 9월 15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중장년기본법안

(2026. 8. 21.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3)

9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청원 회부

비대면 약 배송 정책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

(2026. 9. 12. 권소윤 외 52,30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346)

9월 14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	-	-	-	-	6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1
질병관리청	-	-	-	-	-	-